

## (국제무역학과 입학전형 및 종합시험 내규)

### \* 입학전형

#### 제1조 지원자격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자격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 제2조 전형방법 및 기준

① 모든 지원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함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4. 학력 조회 동의서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기타

제3조 평가 대학원 행정실에 정해진 평가기준 및 원칙,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4조 합격사정 3인의 전임교원을 통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모두 합격하여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합격

### \* 종합시험

**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과목)** 대학원 국제무역학과에서 수강한 교과목 중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국제무역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국제무역학과 전임교수로 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문제는 서술형(논술형, 설명형, 사례형 등)으로 출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학과장은 종합시험 성적을 시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